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3-----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3. 13

다. 상정일자 : 제 11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2003. 3. 20)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조동규 재무과장)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평동 복지회관 신축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m ²)	구 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구 평 동 복지회관 신 축	건물 신축	구평동 125-23, 125-39	1,324 (400평)	철 근 콘크리트	· 지상5층- 주차장,관리실, 어린이집,어린이 놀이공간,노인정, 회의실,문화교실, 생활체육관등	1,555,000

- 다대2동 어린이집 신축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적(m ²)	구 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다대2동 어린이집 신 축	건물 신축	다대동 63-4 63-19 120-28, 120-55 1435-3	661 (200평)	철 근 콘크리트	· 지상2층- 어린이집, 어린이놀이 시설등	572,420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2002. 10우리구 재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받아 2002. 11월에 본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 건물 신축할 사유가 발생되어 본 관리계획에 추가하는 취득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구평동 복지회관 신축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부지에 구평동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지원금액이 1,995백만원 남아 있어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대2동 어린이집 신축건은 행자부의 시범사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 950백만원중 예산확보액이 800백만원 (국비 5억, 시비 15억, 구비 15억)이며 이중 토지매입비 380백만원을 제외하면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 부족한 금액은 1회추경시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후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 금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취득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의 비협조로 종합적인 계획없이 그때그때 변경승인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은 각 실과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종합계획이 수립된후 처리되어야 할것임.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